

2025년도 제1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I. 제 안 경 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II. 제 안 사 유

- 민생경제 회복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법정 의무경비 정산 등을 위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III. 추가경정예산(안)

1. 총 괄

가.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483,377	474,761	8,615	1.8	
일	반 회 계	333,755	332,116	1,639	0.5	
특 별 회 계	소	계	149,622	142,645	6,977	4.9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8,645	8,645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250	-	3,250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37,727	134,000	3,727	2.8	

나.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356,474	1,348,022	8,452	0.6
일반회계		622,681	620,832	1,849	0.3
특별회계	소 계	733,793	727,190	6,603	0.9
	교통사업특별회계	29,973	29,973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250	-	3,250	-
	도시개발특별회계	700,570	697,217	3,353	0.5

2. 회계별 사업내역

가.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사유
장	관	항	목				
총 계				14,935	13,296	1,639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14,678	13,296	1,382	맨홀정비 청구수입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등	기금	235	-	235	지하도상가 냉난방기 교체 국고보조금 편성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	-	9	'재난관리자원 비축 관리'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	-	13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2) 교통사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사유
장	관	항	목				
총 계				3,250	-	3,25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50	-	3,250	'태릉~구레C간 도로확장'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사유
장	관	항	목				
총 계				3,727	-	3,727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2,214	-	2,21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금 일부 환수액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등	기금	1,423	-	1,423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국고보조금 편성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9	-	89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나. 세출예산

1) 일반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x235) 2,349	(x-) 500	(x235) 1,849		
계속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재난안전정책과)	15	-	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음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편성	-
계속사업	서울 지하 지킴이 관측망 설치	800	500	300	○지반침하 관측망 20개소 추가 설치	p. 1,040
신규사업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	1,000	-	1,000	○지반침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들의 상관관계 모델링 구축	p. 1,043
신규사업	지하도상가 냉난방기 교체	(x235) 517	-	(x235) 517	○지하도상가 냉난방기 교체 국고보조금 반영	p. 1,067
계속사업	국고보조금 반납(도로시설과)	17	-	17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편성	-

2) 교통사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7,230	7,000	230		
계속사업	국고보조금 반납(도로계획과)	3,250	-	3,250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편성	-

4) 도시개발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x1,423) 255,398	(x-) 252,045	(x1,423) 3,353		
계속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35,049	35,000	49	○굴착 공사장 안전관리비(GPR 탐사 및 육안조사) 증액	p. 999
계속사업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	1,000	2,700	△1,700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 추진시기 지연으로 인해 보상비 일부 감추경	p. 1,005
계속사업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9,309	48,395	914	○굴착 공사장 안전관리비 (GPR 탐사 및 육안조사) 증액	p. 1,010
계속사업	긴급 도로개선	2,100	3,100	△1,000	○관련기관 협의 등으로 인해 연내 집행 어려운 3개소 공사비 등 감추경	p. 1,016
계속사업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	10,055	9,000	1,055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미지급용지 보상비 편성	p. 1,021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계속사업	신당역~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	600	-	600	○지하상가 노후화에 따른 추가공종 및 유관기관 요구사항 반영으로 증가한 사업비 편성	p. 1,025
계속사업	양재대로 구조개선	29,110	28,827	283	○굴착 공사장 안전관리비 (GPR 탐사 및 육안조사) 증액	p. 1,030
계속사업	잠수교 전면 보행화	2,971	7,571	△4,600	○올해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으로 연내 집행 어려운 공사비 감추경	p. 1,035
계속사업	노후 포장도로 정비	93,356	91,484	1,872	○맨홀 평탄성 개선공사 추가 공사비 편성	p. 1,046
계속사업	가공배전선 지중화	(x1,423) 7,091	3,260	(x1,423) 3,831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한 4개소 공사비 편성	p. 1,051
신규사업	정릉천2복개 구조물 내진성능보강	-	200	△200	○'24.12월 정밀안전점검 시 내진성능 재검증 결과 별도 보완설계가 불필요 하여 설계비 감추경	p. 1,055
계속사업	도로시설물 경관조명 유지보수	4,850	1,350	3,500	○한강변 강변북로 교량 구조물로 인한 하부 및 주변지역 미관저해로 경관조명 개선 필요	p. 1,058
계속사업	도로터널 노후 방재시설 개량	5,000	6,369	△1,369	○개봉 지하차도 방재시설 보완 방재등급 상향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필요(3,091백만원 감), 남산 통합관리센터 시스템 통합 (1,722백만원 증)	p. 1,062
계속사업	국고보조금 반납(도로시설과)	118	-	118	○ 지하차도 진입 차단설비 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편성	-
계속사업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14,789	14,789	-	○(재원변경) 소방안전교부세 407백만원 증, 자체재원 407백만원 감	-

IV. 검토의견

1. 개요

1) 일반회계

가) 세입 : 기정예산 대비 0.5% 증가한 3,337억원 55백만원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0.3% 증가한 6,226억원 81백만원

2)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입 : 기정예산과 동일

나) 세출 : 기정예산과 동일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입 : 32억 50백만원 신규편성

나) 세출 : 32억 50백만원 신규편성

4) 도시개발특별회계

가) 세입 : 기정예산 대비 2.8% 증가한 1,377억 27백만원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0.5% 증가한 7,005억 70백만원

○ 서민과 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을 지원하고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해 금회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서울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8조 1,545억원 대비 3.4%(1조 6,146억 원) 증가한 49조 7,691억원 규모임.

○ 이번 추경예산(안)의 투입 주요 분야는 ▲민생안정(4,698억원) ▲도시안전(1,587억원) ▲미래투자(1,335억원) 3개 분야이며,

- 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금회 21건의 사업에 84억 52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음.
-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 유지를 위해 ‘도시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동부간선 지하화(재정구간)’,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등 대형 굴착공사장 GPR탐사를 강화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서울 지하 지킴이 관측망 설치’,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 등 지반침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며,
- 노후 인프라를 보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후 포장도로 정비’ 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음.
- 따라서 금회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이번 추경 예산(안)의 ‘도시안전’에 해당하는 사업들로 시가 밝힌 추경의 목적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2. 분야별 검토 의견

가. 세입 예산안

(1) 일반회계

- 2025년도 제1회 재난안전실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32억 96백만원 대비 16억 39백만원이 증가한 149억 3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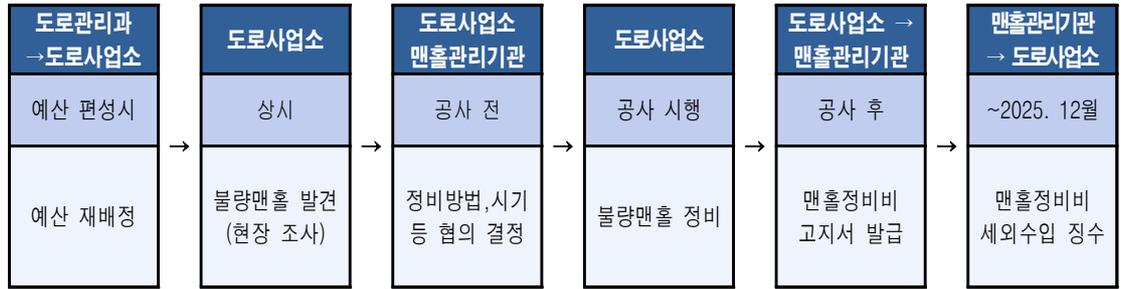
[표] 추경예산안 세입편성(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A)	증감 (B)	추경예산안 (A+B)	사유
장	관	항	목				
총 계				13,296	1,639	14,935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13,296	1,382	14,678	맨홀정비 청구수입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등	기금	-	235	235	지하도상가 냉난방기 교체 국고보조금 편성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9	9	'재난관리지원 비축 관리'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13	13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먼저,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은 맨홀 정비에 따른 청구수입 13억 8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맨홀 정비 청구수입은 도로관리과(6개 도로사업소)에서 불량 맨홀에 대해 '맨홀 평탄성 개선공사'를 시행한 후 해당 맨홀

관리기관¹⁾에 정비비용을 고지·징수하는 세외수입으로



[그림] 맨홀 정비 및 맨홀정비비 징수 절차

- 하반기에 ‘맨홀 평탄성 개선공사’ 사업으로 총 900개소의 맨홀을 추가 정비할 계획임에 따라 금회 추경에서 이에 대한 정비비용(18억 72백만원)²⁾에 예상 징수율(78.3%)³⁾을 반영한 13억 82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 다음으로, 일반회계 보조금 중 ‘기금’은 ‘종각지하도상가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사업’을 위해 지원된 국고보조금 2억 35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2025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통해 동 사업이 선정⁴⁾됨에 따른 것임.

1) 맨홀관리기관: 상수도(수도사업소), 하수도(자치구 하수 담당 부서), 전기(한국전력공사), 통신(KT, SKT 등), 가스(서울도시가스(주) 등) 등

2) ‘노후 포장도로 정비’ 18억 72백만원 증액
 - 산출근거: 2,080천원×900개소 = 1,872,000천원
 ※ 맨홀 1개소 정비비 : 2,080천원
 ※ 900개소 = 6개 사업소×150개소

3) 징수율: 73.8% (최근 5년 평균 징수율)
 ※ 미징수액 발생 시 다음 해에 ‘지난년도 수입’으로 징수 예정.

4) 【2025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 지원항목: 중각지하도상가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 지원기관: 한국환경공단
- 지원금액: 235백만원
- 보조금 지급방식: 선금 또는 준공금 지급시 50%(부가세 제외) 보조하여 지급

-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중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천 2백만원 증액은 ‘재난관리자원 비축 관리’와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 2개 사업과 관련하여 ’24년도 사업 완료 후 남은 국고보조금 잔액을 세입처리한 것임.
- 먼저, ‘재난관리자원 비축 관리’⁵⁾사업 관련 일반회계 세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백만원 증가는 ‘23년 교부된 국고보조금(2억 67백만원)에 대해 용역비(1억 25백만원), 재난관리 물품 구입비 등(1억 33백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국비 잔액이며,
-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⁶⁾ 사업은 ’24년도 예산 8억 53백만원(국비 4억 25백만원 + 지방비(시비, 구비) 4억 28백만원) 중 8억 18백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3천 5백만원에서 시반납 대상 국비 1천 3백만원을 반납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참고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세입은 금회 세출예산안에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포함되어 있음.

5)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에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고 재난발생(우려) 시 필요기관에 동원·지원하는 사업

6)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설비 원격점검제도 도입에 따라 가로등 분전반에 원격점검 장치를 설치하고 관제센터로 정보(전압, 전류, 누전 등)를 실시간 전송하여 원격으로 전기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2) 교통사업특별회계 : 해당 없음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은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사업의 ‘2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비 반납액을 편성한 것임.
- 이는 동 사업이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단계별로 서울시와 구리시 전체구간의 설계를 모두 완료하여 총사업비 조정협의 이후 발주가 가능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국비보조 50%)이며,
- 서울시 구간의 실시설계는 ‘23.5월 완료되었으나 구리시 구간의 실시설계 미완료와 서울시 구간의 우선착공에 대한 구리시 반대로 당분간은 서울시 구간 공사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 서울시 구간의 우선착공을 추진하고자 편성했던 국비 32억 5천만원을 불용처리함에 따른 결과이며, 상세한 사업추진 지연 경위는 금회 세출예산 감액에 대한 검토의견에 기술함.

[표] 추경예산안 세입편성(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A)	증감 (B)	추경예산안 (A+B)	사유
장	관	항	목				
총 계				-	3,250	3,25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3,250	3,250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 도시개발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금’ 일부 환수액과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에 편성된 2025년도 국고보조금,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것임.

[표] 추경예산안 세입편성(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A)	증감 (B)	추경예산 (A+B)	사유
장	관	항	목				
총 계				-	3,727	3,727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	2,214	2,21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금 일부 환수액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등	기금	-	1,423	1,423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국고보조금 편성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89	89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안 중 ‘그외수입’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무상귀속 대상 토지를 유상매각함에 따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1심에서 시가 패소함에 따라 ‘19.12월 판결금 및 지연 손해금 477억원을 지급했으나
- 2심(‘21.12월)에서 사건토지 중 일부가 무상귀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 주장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1심 판결금이 하향 조정되어 가지급했던 1심 판결금 중 22억 14백만원을 환수조치(‘25.4월)함에 따른 것임.

□ 소송개요

- 사 건 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1105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321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다206179 부당이득금
- 당 사 자 :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 / (피고) 서울특별시
- 사건토지 : 은평구 진관내동 283-3외 178필지 5,081㎡ (도로145필지, 하천34필지)
- 소송가액 : 37,032백만원 (도로 192억, 하천 178억) ※ 1심 기준
- 사건내용 : 무상귀속 대상 토지를 유상매각함에 따른 매매대금반환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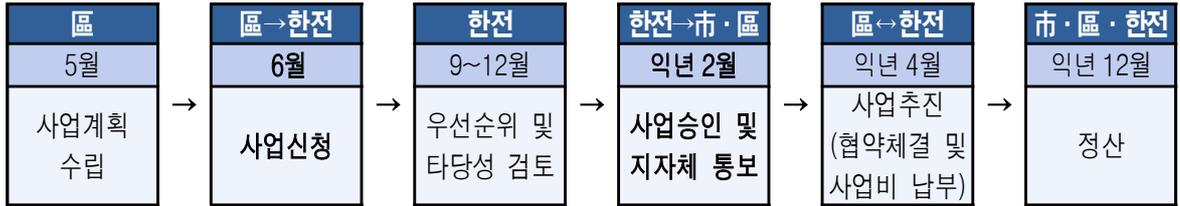
□ 진행경과

- '04.02.25.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서울시고시 제2004-58호)
- '08.09.24. : 유무상귀속 협의(市↔SH공사)
- '10.06.30. : 유상귀속 토지 매매계약 체결
- '15.12.24. : 부당이득금 반환 소 제기(SH공사→市)
- '19.12.05. : 1심 판결선고 (원고일부승, 市 패소)
 - ▶ 179개 필지 중 157필지에 대한 원고 승
 - ▶ 판결금 조정 (370억→325억)
 - ▶ 판결금 325억원 및 지연손해금 152억원(총477억원) **가지급** ('19.12.24.)
- '19.12.19. : 우리시 항소장 제출
- '21.12.09. : 2심 판결선고 (원고일부승, 市 패소)
 - ▶ 市 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패소 판결금 조정(325억→304억)
- '21.12.29. : 대법원 상고 (SH와 우리시 모두 상고)
- '22.01.18.~ : 3심 진행
- '25.03.25. : **조정성립 (쌍방 소취하)**
- '25.04.08. : **서울시 상고 취하**
- '25.04.09. : **SH 상고 취하 ⇒ 종국결과 : 2심 판결로 확정**

- 다음으로, '가공배전선 지중화'는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⁷⁾으로, 한전은 매년 6월 자치구에서

7) 일반사업, 그린뉴딜사업 등 지중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매칭비율이 다름.

신청한 사업지를 검토·승인하여 익년 2월 최종사업지를 확정함에 따라



[그림]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시행절차

○ '25년 2월 한전에서 승인한 10개소 사업 중 그린뉴딜사업에 해당하면서 당해연도 구비 확보 및 투자심사⁸⁾ 등 사전절차를 완료한 2개소⁹⁾에 대해 국고보조금 14억 23백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표] 2025년도 한전 승인사업 10개소

(단위 : 백만원)

연번	區	사업명	총 사업비(d) (d=a+b+c+d)	한전· 통산사(a)	구비(b) (도로 복구비)	국비 (간주)(c)	시비 (예정액)(d)
1	구로구	가마산로(영림중)	4,891	2,286	1,013 (399)	978	614
2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노후산단	2,227	942	521 (202)	445	319
3	성북구	한성대 성북로	1,867	800	667 (267)	-	400
4	강북구	솔샘로(미양초)	2,640	1,111	710 (419)	528	291

[표]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비 분담비율

(단위 : %)

구분	계	한전	국비	시	구	비고
그린뉴딜	100	50	20	15	15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
일반사업	100	50	-	25	25	

8) 자치구 투자심사 대상 :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
시 투자심사 대상 : 총 공사비 60억원 이상

9) 국고보조금 지원

- 구로구 가마산로 영림중: 9억 78백만원
-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노후산단: 4억 45백만원

5	금천구	시흥대로(금천고)	8,999	4,215	1,634 (284)	1,800	1,350
6	광진구	장안초등학교 주변	5,657	2,571	1,161 (369)	1,131	793
7	도봉구	도봉중학교 통학로	3,495	1,275	1,233 (945)	699	288
8	중랑구	장미꽃빛거리(B)존	2,500	950	1,075 (600)	-	475
9	중랑구	용마산로(중화중)통학로	8,617	3,411	3,502 (1,798)	-	1,704
10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4,198	1,276	2,284 (1,646)	-	638

-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중 ‘국고보조금사용잔액’ 8천 9백만원 증액은 24년도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국비 50% 매칭) 완료 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세입처리된 것임.
- 참고로, 해당 세입은 금회 세출예산안의 국고보조금 반납¹⁰⁾으로 연계됨.

10) 국고보조금 반납(지하차도 진입 차단설비 설치 사업) 1억 18백만원
= 국비 집행잔액(89백만원) + 이자발생액(29백만원)

나. 세출 예산안

(1) 일반회계

-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서울 지하 지킴이 관측망 설치’ 등 5건에 18억 49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음 ([표] 참조).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 번	부서	세부사업명	추경예산 (A+B)	기정예산 (A)	증감 (B)	사 유
총 계			(x235) 2,349	(x-) 500	(x235) 1,849	
1	재난 안전 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 (재난안전정책과)	15	-	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서비스, 지역 재난 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편성
2	도로 관리과	서울 지하 지킴이 관측망 설치	800	500	300	○지반침하 관측망 20개소 추가 설치
3	도로 관리과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	1,000	-	1,000	○지반침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들의 상관관계 모델링 구축
4	도로 시설과	지하도상가 냉난방기 교체	(x235) 517	-	(x235) 517	○지하도상가 냉난방기 교체 국고보조금 반영
5	도로 시설과	국고보조금 반납(도로시설과)	17	-	17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편성

1) 서울 지하 지킴이 관측망 설치 (사업별설명서 p.1040)

○ 동 사업은 서울시 현장 실측 기반침하 관측망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반침하를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5억원 대비 3억원(60%) 증가한 8억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800,000	(x-) 500,000	(x-) 300,000
시설비	(x-) 800,000	(x-) 500,000	(x-) 300,000

○ 이는 대형 공사장 주변에서 잇따른 기반침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 관내에서 시행 중인 대형 굴착공사장 3개소¹¹⁾ 주변에 기반침하 변동을 실시간으로 계측가능한 기반침하 관측망¹²⁾을 설치(총 20개소)하여 지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9호선 4단계 건설공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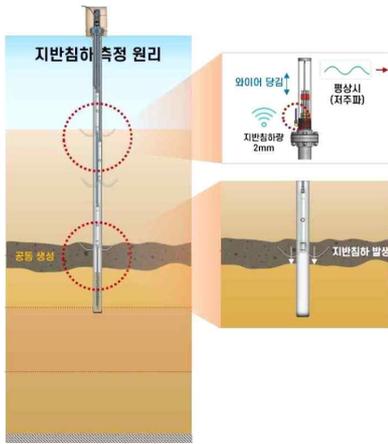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장]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건설공사장]

[그림] 관측망 설치 대상 대형 굴착공사장

- 11) 관측망 설치 대상 대형 굴착공사장 3개소: 9호선 4단계 건설공사장,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장,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건설공사장
- 12) 기반침하 관측망: 관측센서(위성기반 관측센서, 지표 변형 관측센서, 지하공동 관측센서, 지반 변위 관측센서)가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기반침하 변동을 측정하는 관측장비



[지반침하 관측망]



[지반침하 관측망 모니터링 시스템(안)]

[그림] 지반침하 관측망

- 서울시는 2024년에 실시한 ‘서울시 지반침하 관측망 설치 및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전역의 지반 안전성 조사를 위해 2025년부터 5년간 자치구당 10개소씩 총 250개소의 지반침하 관측망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2025년도는 그 1단계로 본예산 5억원을 편성하여 중구, 종로구, 강서구 등 3개 자치구에 30개소를 설치중에 있음.

[표] 연도별 관측망 목표 설치 수량

구분	설치연도	설치 자치구	설치목표(개소)	누적설치(개소)
1차년도	2025	중구, 종로구, 강서구	30	30
2차년도	2026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용산구	50	80
3차년도	2027	영등포구, 동대문구, 은평구, 양천구, 성동구	50	130
4차년도	2028	마포구, 동작구, 서대문구, 구로구, 성북구, 노원구	60	190
5차년도	2029	관악구, 도봉구, 강북구, 강동구, 중랑구, 금천구	60	250

- 지반침하가 일부 취약 지역에서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대형 굴착공사장 주변에 실시간 계측이 가능한 스마트 계측기를 설치하여 지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본 추경 사업은 그 목적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
- 또한, 굴착공사 등 위험요소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관측망을 설치하는 방식은 서울시 전역에 광범위하게 설치하는 것보다 실효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 ‘서울 지하 지킴이 관측망 설치’ 사업의 중장기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이러한 점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2)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 (사업별설명서 p.1043)

- 동 사업은 지반침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고도화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우선정비구역도의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000,000	(x-) 0	(x-) 1,000,000
시설비	(x-) 1,000,000	(x-) 0	(x-) 1,000,000

- '24.8월 서대문구 연희동 지반침하 사고 이후 예고 없이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울시는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¹³⁾하고 그 일환으로 '지반침하 우선정비구역도(지반침하 안전지도)'를 '24.12월 제작하였음.
- 지반침하 우선정비구역도는 지하시설물 정보, 침하 발생 이력, 굴착공사 현장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지반침하 가능성을 분석하고, 위험도를 5단계로 구분하여 우선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도면화한 것으로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이후, '25. 3월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지반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이 한층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도 높아진 상황임.
-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지도가 GPR탐사¹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 관리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그 자체가 위험등급을 나타내는 자료가 아니며 공개 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개를 유보해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언론 등을 중심으로 해당 지도에 대한 공개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반침하에 영향

13)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연희동 사고 관련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 발표', 2024.9.4.

14) GPR(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

을 주는 다양한 원인과 시간·공간 변화를 반영한 고도화된
지반침하 분석모델을 개발하여 우선정비구역도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 방안을 제시하고자 동 사업을 추진하겠
다는 입장임.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 분석모델 개발 용역」 - 도로관리과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사 업 비 : 10억원
- 주요 과업내용
 - (기초조사) 지반침하 및 공동(空洞) 발생 기초데이터 수집 및 시간 이력 정보 구축
 - 지하수, 지하시설, 공사장, 침수 이력 등 다변량 시간 기반 데이터 확보
 - (분석모델) 시간 이력 기반 지반침하 발생 인자 분석 및 동적 분석모델 개발
 - 공사장, 지하시설 노후화, 지하수 등의 시간 변화 영향을 통합한 분석모델 수립
 - 서울시 공동 발생 특성을 반영한 시공간 분석 모델 수립
 - (지반정보) 고정밀 지반정보 예측모델 및 자동 갱신 시스템 개발
 - 서울시 전역의 시추공 데이터를 수집 및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예측기법 구축
 - 지반 데이터의 변경 현황 반영 주기 단축을 위한 자동 갱신 기술 도입
 - (관리체계) 지도 활용을 위한 관리·공개 체계 정립
 - 유관부서 활용방안과 연계한 도면 체계 마련
 - 공개 대상 및 범위 설정, 구역별 상세 대응 계획 수립
 - (지도작성) 시간 이력 기반의 위험 분석 결과를 반영한 지도 구축(안) 작성
 - 대규모 굴착공사장 등에 우선 적용방안 제시
 - 시간 이력 기반의 위험도 반영으로 실시간 시스템 연계 방안 수립
 - 모델 결과 및 정밀 지반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정보공개 방안 제시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 방안>

기 존		개 선	
지하시설물 정보	(시설물 분류 통계)	지하시설물 정보	(시설물별 시간 이력 고려)
지반 조건	(지반 6종 두께)	지반 정보	(데이터 마이닝 기반 정보 모델링)
-		공동 발생 이력	(시간 이력)
-		지하철 인근 영향	(근접 거리)
-		지하수 영향	(시간이력 고려)
-		굴착공사 영향	(공사장 근접거리, 시간)
-		침수 이력	(시간 이력 고려)
-		GPR탐사	(GPR탐사 결과 반영)

-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 우선정비구역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뢰도 높은 예측 기반의 지도를 제작하려 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추진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도 제작부터 대시민 공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정보를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 최종 지도 완성 이전이라도 민감 정보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일부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음.

3) 지하도상가 흡수식냉온수기 교체 사업 (사업별설명서 P.1067)

- 동 사업은 지하도상가 노후 냉방기를 고효율의 장비로 교체하여 냉방효율 향상 및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한 것으로, 금회 5억 1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235,000) 517,000	(x-) 0	(x235,000) 517,000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x235,000) 517,000	(x-) 0	(x235,000) 517,000

- 이는 종각지하도상가의 노후(2013년식)된 흡수식냉온수기 2대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¹⁵⁾을 획득한 직화흡수식냉온수기로 교체하려는 것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2025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50%) 지원사업임.



[그림] 종각지하도상가 흡수식냉온수기 설치 현황

- 종각지하도상가 흡수식냉온수기 외에도 지하도상가 내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설비가 다수 설치([표] 참고)되어 있어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냉난방 공급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바, 향후에도 국비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적극적인 시비 투자를 통해 보다 많은 지하도상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표] 지하도상가 내 내용연수* 초과 노후 설비 현황('25.5월 기준)

구 분	계	을지로	종로	명동	강남	터미널	영등포
냉온수기,냉동기	29	5	4	5	6	4	5
패키지 냉난방기	실외기	30	25	3	2	-	-
	본체	15	11	3	1	-	-
시스템에어컨	62	16	28	2	16	-	-
냉각탑	27	2	4	5	6	6	4

* 내용연수: 냉온수기(10년), 냉동기·냉난방기·시스템에어컨(9년), 냉각탑(12년)

* 강남 냉온수기, 을지로 시스템에어컨은 올해 교체 예정

15) 「고효율에너지인증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4-153

(2) 교통사업특별회계 : 해당 없음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재난안전실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반납(도로계획과)’ 1건에 3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표] 참조).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명	추경예산 (A+B)	기정예산 (A)	증감 (B)	사 유
총 계			3,250	-	3,250	
1	도로 계획과	국고보조금 반납(도로계획과)	3,250	-	3,250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편성

- 이는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사업에서 ‘23년도에 기 교부받았던 국비 32억 5천만원에 대해 반복된 이월에도 불구하고 결국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것임.

- 동 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16)에 따라 국고를 지원받는 서울시와 구리시 구간

16)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 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 2의2. 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3.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4.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으로 이뤄진 광역도로 확장사업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적용을 받는 관리대상¹⁷⁾이기 때문에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가 완료될 때마다 서울시 구간과 구리시 구간 통합으로 기재부(서울시+구리시→국토부→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협의¹⁸⁾를 거쳐야 하는 상황임.

- 이에 서울시 구간의 실시설계가 '23.5월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 구간의 실시설계가 지연되면서 총사업비 조정협의 등 사업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 시는 서울시 구간의 우선착공을 위해 국비를 편성했었으나 구리시의 반대('24.2월)로 서울시 단독 추진이 불가해져 이미 교부받았던 국비를 반납하려는 것이며, 향후 사업추진이 정상화될 경우 반납했던 국비는 재교부될 예정임.

17)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아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2.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3.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연구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 선박·항공기 건조사업 등 연구기반구축 R&D사업(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 ② ~ ⑦ (생략)

18)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조(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①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호의 단계에 따라야 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의 관리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설사업 및 연구기반구축 R&D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건축사업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한다),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2.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정보 시스템 마스터 플랜(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이하 'ISMP'라고 한다), 분석, 설계, 발주 및 계약,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 ②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각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가재정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과학기술기본법령, 전자정부법령 등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당해 연도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의한다.

- 한편, 동 사업의 경우 기본설계 총사업비 조정협의 과정에서 구리시의 증액과 설계지연으로 인해 서울시 구간 사업 추진까지 순연되어 왔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에서 역시 구리시 구간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결국 교부받은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에 아쉬움이 있음.
- 따라서, 금회 국비 반납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으나 향후 국토부 및 구리시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및 협조를 통해 광역교통사업의 이와 같은 불합리 및 비효율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도시개발특별회계

- 재난안전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등 총 15건에 33억 53백만원을 증추경하려는 것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명	추경예산 (A+B)	기정예산 (A)	증감 (B)	사 유
합 계			(x1,423) 255,398	(x-) 252,045	(x1,423) 3,353	
1	도로 계획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35,049	35,000	49	○ 굴착 공사장 안전관리비 (GPR 탐사 및 육안조사) 증액
2	도로	이수과천 복합터널	1,000	2,700	△1,700	○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

	계획과	건설				추진시기 지연으로 인해 보상비 일부 감추경
3	도로 계획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9,309	48,395	914	○굴착 공사장 안전관리비 (GPR 탐사 및 육안조사) 증액
4	도로 계획과	긴급 도로개선	2,100	3,100	△1,000	○관련기관 협의 등으로 인해 연내 집행 어려운 3개소 공사비 등 감추경
5	도로 계획과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	10,055	9,000	1,055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미지급용지 보상비 편성
6	도로 계획과	신당역~신당지하상 가 연결통로 설치	600	-	600	○지하상가 노후화에 따른 추가공종 및 유관기관 요구사항 반영으로 증가한 사업비 편성
7	도로 계획과	양재대로 구조개선	29,110	28,827	283	○굴착 공사장 안전관리비 (GPR 탐사 및 육안조사) 증액
8	도로 계획과	잠수교 전면 보행화	2,971	7,571	△4,600	○올해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으로 연내 집행 어려운 공사비 감추경
9	도로 관리과	노후 포장도로 정비	93,356	91,484	1,872	○맨홀 평탄성 개선공사 추가 공사비 편성
10	보행 환경 개선과	가공배전선 지중화	(x1,423) 7,091	3,260	(x1,423) 3,831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한 4개소 공사비 편성
11	도로 시설과	정릉천2복개 구조물 내진성능보강	-	200	△200	○'24.12월 정밀안전점검 시 내진성능 재검증 결과 별도 보완설계가 불필요 하여 설계비 감추경
12	도로 시설과	도로시설물 경관조명 유지보수	4,850	1,350	3,500	○한강변 강변북로 교량 구조물로 인한 하부 및 주변지역 미관저해로 경관조명 개선 필요
13	도로 시설과	도로터널 노후 방재시설 개량	5,000	6,369	△1,369	○개봉 지하차도 방재시설 보완 방재등급 상향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필요(3,091백만원 감), 남산 통합관리센터 시스템 통합(1,722백만원 증)
14	도로 시설과	국고보조금 반납(도로시설과)	118	-	118	○ 지하차도 진입 차단설비 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편성
15	교량 안전과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14,789	14,789	-	○(재원변경) 소방안전교부세 407백만원 증, 자체재원 407백만원 감

1)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3개 사업 (사업별설명서 p.999, 1010, 1030)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양재대로 구조개선’ 등 굴착공사가 진행 (예정) 중인 이들 3개 대형 건설사업에 대해 굴착구간 GPR(지표투과레이더)탐사를 위해 각각 4억 9백만원, 9억 14백만원, 2억 83백만원을 증액 편성함.

[표]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구간)	계	(x-) (채30,000,000) 35,048,825	(x-) (채30,000,000) 35,000,000	(x-) 48,825
	시설비	(x-) (채30,000,000) 32,548,825	(x-) (채30,000,000) 32,500,000	(x-) 48,825
	감리비	(x-) 2,500,000	(x-) 2,500,000	(x-) 0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계	(x-) (채40,000,000) 49,309,000	(x-) (채40,000,000) 48,395,000	(x-) 914,000
	시설비	(x-) (채40,000,000) 46,398,000	(x-) (채40,000,000) 45,484,000	(x-) 914,000
	감리비	(x-) 2,911,000	(x-) 2,911,000	(x-) 0
양재대로 구조개선	계	(x-) (채25,000,000) 29,110,000	(x-) (채25,000,000) 28,827,000	(x-) 283,000
	시설비	(x-) (채25,000,000) 27,390,000	(x-) (채25,000,000) 27,107,000	(x-) 283,000
	감리비	(x-) 1,720,000	(x-) 1,720,000	(x-) 0

- 이는 ‘24.8월 서대문구 연희동, ‘25.3월 강동구 명일동, ‘25.4월

신안산선 등의 대형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땅꺼짐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GPR탐사를 통해 지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 추경 목적의 3대 핵심¹⁹⁾ 중 ‘도시안전’의 지반침하 대책 추진에 해당한다 하겠음.

- 금회 증액분은 각각의 사업에서 굴착공사 기간동안 해당 연장에 대해 주 1회 빈도로 GPR탐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을 당초 공사비에 추가로 반영하려는 것이며 산출근거는 다음 [표]와 같음.

[표] GPR 탐사비용 산출근거

사업명	금액	산출근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 구간)	48,825천원	2.1km×10주×2,325천원 = 48,825천원 ※ 연장 : 2.1km ≙ 514m×4회 (2차로+보도 양측) ※ 기간 : 10주('25.10월 중순~연말), 주1회 (굴착기간 : '25.10.~'29.)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914,000천원	15.12km×26주×2,325천원 ≙ 914,000천원 ※ 연장 : 1공구 : 6.94km = 1.22km×2회(인도양측) + 0.75km×6회 2-1공구 : 7.49km = 26km×4회(보도포함)+0.62km×3회(보도포함) +0.295km×2회(보도포함) 2-2공구 : 0.696km = 0.232km×3회(차로+보도) ※ 기간 : 26주('25.07.~12.), 주1회 빈도 (굴착기간 : '21.10.~'29.)
양재대로 구조개선	283,000천원	4.68km × 26주 × 2,325,000원 ≙ 283,000천원 ※ 연장 : 4.68km = 1.17km(종방향거리)× 4회 ※ 기간 : 26주('25.07.~12.), 주1회 빈도 (굴착기간 : '24.9.~'25.12.)

- 따라서 잇따른 땅꺼짐 사고로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추경편성은 시의적절하다 사료되나 일회성 조치가 아닌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19) ▲민생안정(4,698억 원) ▲도시안전(1,587억 원) ▲미래투자(1,335억 원)

- 또한, 그 대상범위를 대형 건설공사로 한정하기보다는 굴착공사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 (사업별설명서 p.1005)

- 동 사업은 동작·과천대로의 교통정체와 사당·이수지역의 침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다기능 복합터널을 건설하려는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기정예산 27억원 대비 17억원(63.0%) 감액한 10억원을 편성하였음.

[표]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000,000	(x-) 2,700,000	(x-) Δ1,700,000
시설비	(x-) 1,000,000	(x-) 2,700,000	(x-) Δ1,700,000

- 이는 당초 '25년 예산 27억원이 총 보상비 374억원²⁰⁾ 중 공사 착공을 위한 대상부지의 보상비를 편성한 것이었으나 배수터널에 대한 종합수리검토 및 과천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인해 실시설계 준공이 6개월 지연됨에 따라

- 용지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 추진시기도 '25.9월

20) 도로 74억원, 빗물배수터널 300억원

로 순연될 것으로 예측되어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보상비 17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참고로, 잔여예산 10억원으로는 동 사업구간 시·종점부 및 수직구 등 개착구간에 대한 용지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연내 실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조정하기 위한 감액은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으나 '23.12월 실시협약 체결 당시 당초 '25년 상반기 착공해 '30년 개통이 목표였으나 이미 착공이 1년가량 지연될 것임이 예측되는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3) 긴급 도로개선 (사업별설명서 p.1122)

- 동 사업은 도로 관련 시민생활불편 문제를 발굴해 상습정체를 해소하거나 사고위험도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31억원 대비 10억원(32.3%)을 감액한 21억원을 편성하였음.

[표]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2,100,000	(x-) 3,100,000	(x-) Δ1,000,000
시설비	(x-) 2,100,000	(x-) 3,100,000	(x-) Δ1,000,000

- 당해연도 본예산은 1차 긴급 도로개선 대상지 총 16개소 중 7개소에 대한 공사비(26억원)와 2차 긴급 도로개선을 위한 설계용역비(5억원)를 편성한 것이었으나

[표] '25년 긴급도로개선사업 추진현황(본예산)

(단위: 백만원)

연번	내 용		현황	소요 예산	'25 재배정	'25 집행	준공	비고
소 계				3,100	933	303		
1	공사비	방학로 223~247간 도로확장	공사 단계	500	500	-	6월	도봉구 도로과
2		한국은행 앞 교차로 보행공간 추가 확보	실시 설계	64	-	-	'25년	중구 도로시설과(예정)
3		동부간선도로 중랑교 진출로 분리	실시 설계	400	-	-	'25년	도기본 토목부(예정)
4		가좌로(신사동개사거리) 가각부 개선	실시 설계	300	-	-	12월	은평구 도로과(예정)
5		언주로(매봉터널교차로) 좌회전 차로 연장	실시 설계	466	-	-	12월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예정)
6		남부순환로(서서울호수공원 앞 교차로) 개선	실시 설계	537	-	-	12월	양천구 도로과(예정)
7		불광천 우안 보행환경 개선	실시 설계	400	-	-	'25년	은평구 도로과(예정)
8	설계비	2025년 긴급도로개선 설계용역	시행 중	433	433	303	'26.3.	도로계획과

- '불광천 우안 보행환경 개선'에서 사업규모에 대한 은평구와의 협의, '남부순환로(서서울호수공원 앞)교차로 개선'에서 지장물이설 관련 설계보완, '한국은행 앞 교차로 보행공간 추가확보'에서 사유지 도로에 대한 소송 등의 지연사유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 10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 동 사업과 같이 여러 개의 소규모 대상지에 대해 도로구조 변경 등 도로불편을 개선하는 것은 대상지가 소규모라 하더라도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현황측량, 개선안 도출, 교통안전심의, 지장물조사, 지장물 관리기관 협의, 실시설계 시행, 공사발주 등의 개별적인 절차이행이 각각 필요하므로 사업추진 지연요인의 수가 단일 사업보다 많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집행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4)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사업별설명서 p.1021)

- 동 사업은 도로편입토지(미지급용지 및 국공유지)에 대하여 토지매수 또는 임료 지급 등 손실보상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90억원 대비 10억 55백만원(11.7%) 증가한 100억 5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0,055,213	(x-) 9,000,000	(x-) 1,055,213
시설비	(x-) 10,055,213	(x-) 9,000,000	(x-) 1,055,213

- 이는 양천구 목동 904-12 수도용지(330m²) 중 일부 토지(1,485/5,095지분)에 대한 소송(2024머609624 부당이득금)과 관련해 피고인 시가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금년 12월 31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토록 결정된 판결²¹⁾(‘25.3.14.)에 따

라 해당 토지의 매수를 위한 10억 55백만원을 편성한 것임.

- 한편, 기정예산 90억원과 관련하여 토지보상금 및 부대비용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 지급에 73억원, 미지급용지 임료 지급(26건)에 15억원, 국공유지 사용료 지급(6건)에 1천 8백만원 등을 지출 완료 또는 예정이며, 금회 증액은 상기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가용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5) 신당역 ~ 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사업별설명서 p.1025)

- 동 사업은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간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지하상가 등 주변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본예산은 미편성된 상태에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1) 소송

- 사 건 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머6096624 부당이득금
- 당 사 자 : 원고 이영희 외 4 / 피고 서울특별시
- 판 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25.3.14.)
 - ▶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사건토지의 각 지분을 매수하고 2025.12.31.까지 매매대금으로 1,106,099,100원을 지급하라.

[표]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600,000	(x-) 0	(x-) 600,000
시설비	(x-) 570,000	(x-) 0	(x-) 570,000
감리비	(x-) 30,000	(x-) 0	(x-) 30,000

- 이는 동 사업이 당초 전년도 이월예산(7억 1백만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25.4월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신당지하상가 지하구조물 노후화에 따른 정비 및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유관기관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추가 공종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 부족분을 편성한 것임.
- 추가 공종 발생과 관련해 먼저, '신당지하상가 노후화에 따른 정비'는 해당 지하상가가 '71년 준공해 공용연수가 54년 경과한 노후 지하구조물로, 동 사업의 연결통로 설치를 위한 기존 구조물 철거 과정에서 균열과 누수가 심각하게 발생한 것이 발견되어 보강슬래브 설치²²⁾ 및 방수공²³⁾ 등의 공종 추가로 인해 공사비 3억 8천만원을 계상했으며,
- '유관기관 요구사항'은 신당역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상수도 이설, 소방설비²⁴⁾ 및 CCTV 설치 등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사비

22) "지하상가 기둥 철거에 따른 슬래브 거더 보강 실정 보고", (주)동해종합기술공사, 2024.7.1.

23) "지하상가 천정 및 벽체 지수 실정보고 검토 보고", (주)동해종합기술공사, 2024.8.19.

24) ○ 공사내용

- 소방기계: 펌프실 알람벨브 이설, 구획에 따른 스프링클러 신설 등
- 소방전기: 펌프실 중계기 이설, 유도등 및 감지기 설치 및 배관 배선 등

2억 2천만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상황임.

- 따라서, 동 사업의 마무리단계에서 안전확보 측면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돌발 공종과 신당역과 지하도상가 관리기관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라 여겨짐.

6) 잠수교 전면 보행화(사업별설명서 p.1035)

- 동 사업은 현재 왕복 2차로와 보행로(자전거도로)로 이용 중인 잠수교를 전면 보행로로 전환하고 시민 여가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75억 71백만원 대비 46억원(60.8%) 감소한 29억 7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2,971,000	(x-) 7,571,000	(x-) △4,600,000
시설비	(x-) 2,571,000	(x-) 7,171,000	(x-) △4,600,000
감리비	(x-) 400,000	(x-) 400,000	(x-) 0

-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접근성 개선’과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5.7월 완료 후 하반기 공사 발주를 계획하여 이를 위한 공사비와 감리비를 편성했었으나

□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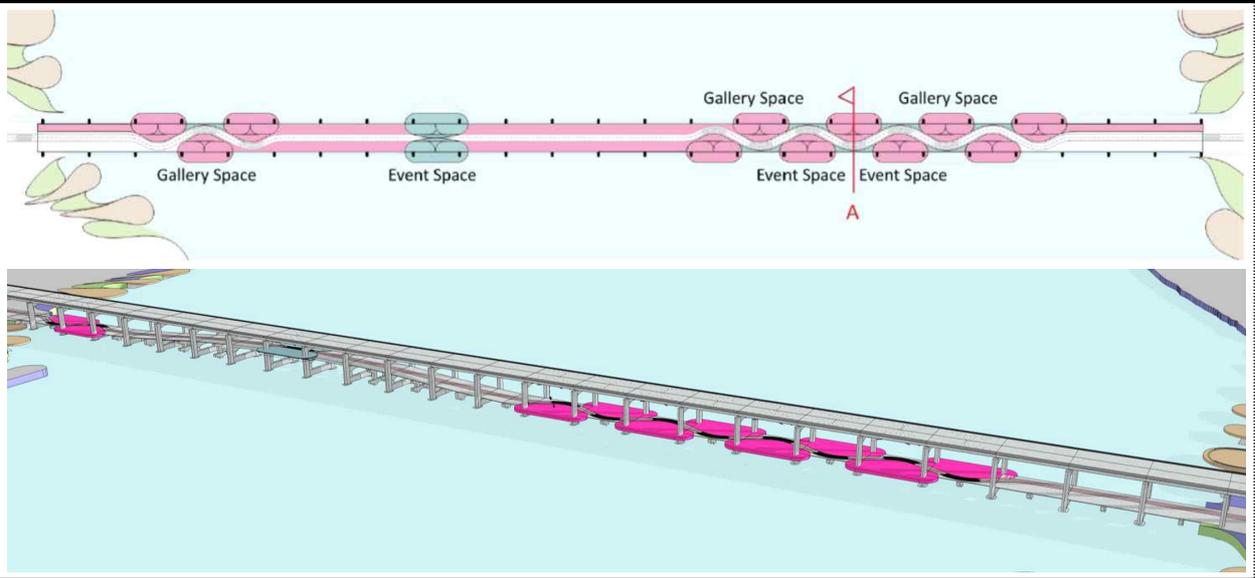
(현 황) 차도(2차로) + 자전거도로 + 보행자도로

⇒ (문제점) 잠수교를 단순 이동공간으로 이용, 행사·축제기간 외 활동공간 부재

(조성방향) 문화공간(보행공간 포함) + 자전거도로

(컨셉) 잠수교를 전면 보행화하고, 문화예술다리로 조성(핑크색 컨셉 유지)

(공간계획) 데크 확장을 통해 이벤트 및 휴식·전망·여가공간 확보



< 평면도 및 조감도(안) >

□ 잠수교 보행 접근성 개선방안

[1] 잠수교 남단 : 고속터미널역(고투물) → 잠수교

(현 황) (지하) 공공보행로(6.0m) → 한강공원 진출입로(1.2m, 계단)

(지상) 보도(1.3m~3.5m) → 지하 보행통로(6.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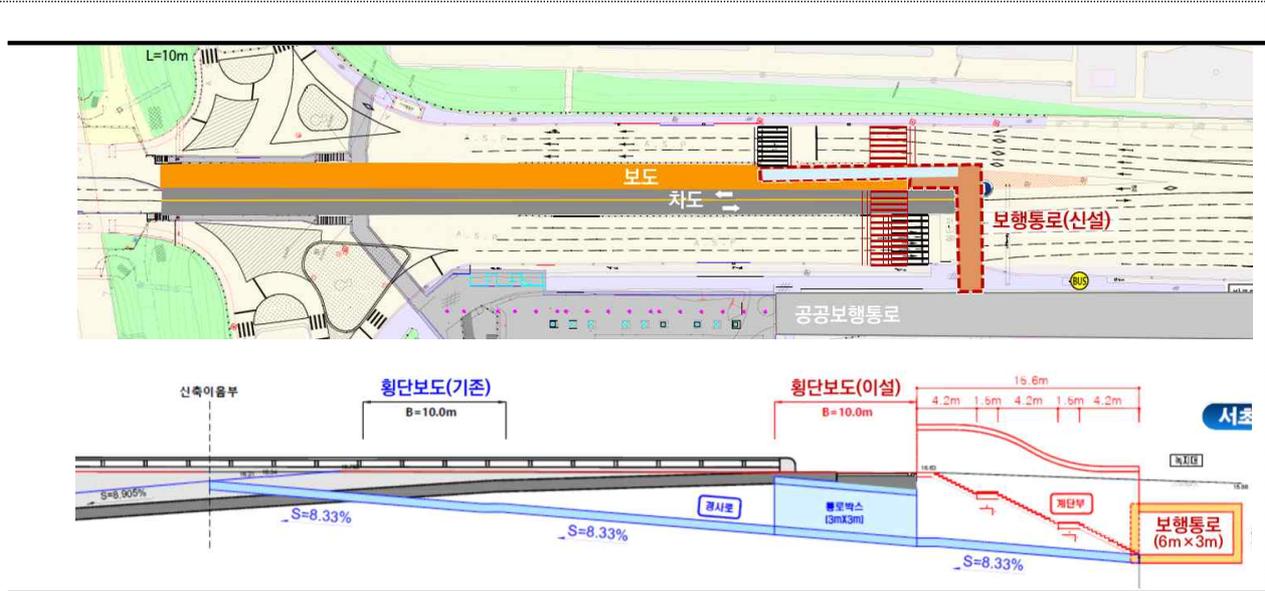
⇒ (문제점) 잠수교를 가기 위해서는 ①지상부 좁은 보도(폭 1.3m)를 이용하거나, 반포대로상 ②횡단보도 이용 또는 ③한강공원 진출입로(1.2m)를 이용해야 함.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 등 많은 인파가 집중될 경우 안전사고 우려

(개선방안) 고속터미널에서 잠수교까지 끊김 없이 넓고 쾌적한 보행로 확보

(단기) 공공보행로(6.0m) → 지하 보행통로(6.0m)^{신설} → 지하 보행통로(6.5m)

(장기) 동측 지상부 보도 확장(3.0m이상) → 횡단보도 → 지하 보행통로(6.5m)



< 지하 보행통로 신설 방안 >

[2] **잠수교 복단** : 용산공원(한강중학교, 녹사평대로) → 잠수교
 (현 황) (동측) 녹사평대로 보도(B=2.0m) → **횡단보도** → 지하 보행통로(B=6.0m)
 (서측) 녹사평대로 보도(B=3.2m) → **한강공원 진출입로(1.2m)**
 ⇒ (문제점) 서측 보도에서는 **횡단보도가 없어 지하 보행통로 접근 불가**

(개선방안) **지하 보행통로 확장** : 2차로 + 보도(6.0m) → **보도(12.0m)**
 녹사평대로 **보도 개선(동측), 횡단보도 신설**



< 잠수교 복단 개선방안 >

○ 보행 데크 확장부-기존교량 연결부분 상세검토, 보행데크와 슬래브교 접합부의 압축단 경사면 접합방법 적정성 재검토 등의 설계자문사항과 난간 교체 범위 최적화, 데크 확장부 배수계획, 교량 신축이음 개선 등의 설계경제성(VE) 검토 결과 등을 반

영해 기존 설계안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 공사발주가 당초 목표보다 약 2개월 가량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공사비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합당한 조치라 사료됨.
- 다만, 지난해 11월 2025회계연도 본예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당시 ‘접근성 개선’과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가 각각 ‘25.2월과 7월 완료예정인 것과 관련하여
- 실시설계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 변수 발생에 따른 편성예산의 실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던 바,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 사료되며,
- 이는 신중하지 못한 사업추진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에 대한 과도한 낙관에 따른 무리한 예산 편성을 방증하는 사례라 할 것이며 시정되어야 할 것임.

7) 노후 포장도로 정비 (사업별설명서 p.1046)

- 동 사업은 노후, 균열, 파손 등으로 포장상태가 불량한 구간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신속한 긴급복구 등 최적의 도로포장 유지관리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914억 84백만원 대비 18억 72백만원(2%) 증가한 933억 5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93,355,935	(x-) 91,483,935	(x-) 1,872,000
사무관리비	(x-) 79,000	(x-) 79,000	(x-) 0
공공운영비	(x-) 23,000	(x-) 23,000	(x-) 0
재료비	(x-) 1,021,600	(x-) 1,021,600	(x-) 0
전산개발비	(x-) 456,615	(x-) 456,615	(x-) 0
시설비	(x-) 87,638,720	(x-) 85,766,720	(x-) 1,872,000
감리비	(x-) 4,100,000	(x-) 4,100,000	(x-) 0
자산및물품취득비	(x-) 37,000	(x-) 37,000	(x-) 0

- 이는 2025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맨홀 평탄성 개선공사’ 명목으로 일상적인 연간 정비 수준인 불량맨홀 3천개소 정비를 위한 6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최근 폭우·폭염 등 극한 기후와 이륜자동차 사고 증가로 인해 맨홀 주변 평탄성 불량 민원이 급증하고, 해빙기 점검²⁵⁾ 결과 당초 계획보다 추가 정비가 필요한 물량이 확인됨에 따라 불량맨홀 900개소에 대한 추가 정비비 18억 72백만원²⁶⁾을 증액 편성한 것임.

25) ‘해빙기 관련 맨홀 점검 및 정비 요청’ 도로관리과-4677호 (2025.3.24.)

- 점검기간: '25.3.26. ~ '25.4.16.
- 점검대상: 사업소별 관리 차도 내 설치된 맨홀

26) 불량맨홀 900개소 정비비 산출근거: 2,080천원×900개소 = 1,872,000천원

※ 맨홀 1개소 정비비 : 2,080천원

※ 900개소 = 6개 사업소×150개소

- 시민 불편 해소와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향후에는 정비 수요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8)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별설명서 p. 1051)

- 동 사업은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기정예산 32억 6천만원 대비 38억 31백만원(117.5%) 증가한 70억 9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1,423,400) 7,091,450	(x-) 3,260,700	(x1,423,400) 3,830,750
시설비	(x1,423,400) 7,091,450	(x-) 3,260,700	(x1,423,400) 3,830,750

- 이는 '25년 2월 한전에서 승인한 최종사업지 10개소 중 투자 심사를 완료된 2개소, 투자심사 미대상²⁷⁾ 1개소, 2024년 한전 승인사업 중 시비 분담금이 미반영되었던 1개소 등 총 4개소의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해 세출예산 38억 31백만원(국고보조금 14억 23백만원 + 시비 24억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27) 자치구 투자심사 대상 :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
시 투자심사 대상 : 총 공사비 : 60억원 이상

[표] 25년도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예산분담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區	사업명	총 사업비 (a+b+c+d)	한전· 통신사(a)	국비(b)	시비(c)	구비(d)
25년 승인 사업	구로	가마산로(영림중)	4,891	2,286	978	614	1,013
	구로	디지털로 26길 노후산단	2,227	942	445	319	521
	성북	한성대 성북로	1,867	800	-	400	667
24년 승인 사업	금천	시흥대로(문성초)	7,574	3,664	1,515	1,074	1,321
총계			16,559	7,692	2,938	2,408	3,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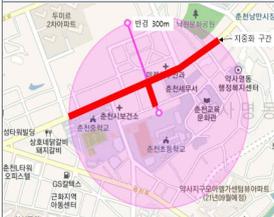
-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구로구의 ‘가마산로(영림중) 지중화사업’과 ‘디지털로 26길 노후산단 지중화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그린뉴딜사업(한전:국비:시비:구비 = 50:20:15:15)으로 신청되어 국고보조금 14억 23백만원을 포함한 23억 56백만원(구비 별도)이 편성되었으며,
- 일반 지중화사업(한전:시비:구비 = 50:25:25)으로 신청된 성북구의 ‘한성대 성북로 지중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18억 67백만원으로 국비 없이 시비 분담금 4억원이 편성되었음.
- 마지막으로 금천구 ‘시흥대로(문성초) 지중화사업’은 24년도 한전 승인사업으로 당초 24년도에 국비가 편성되었으나 투자심사가 미이행되어 시 분담금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투자심사 완료 후 금회 시비 10억 74백만원이 편성된 것임.
-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은 보행자 안전 확보, 도시경관 개선, 통신·전력 인프라 안정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일상생활의 불

편을 해소하고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만큼 초기 단계 부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통학로·전통시장·산업단지 등 국민안전 확보지역을 대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 2025년까지 한 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올해 국비가 교부되었음에도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착수하지 못한 사업들²⁸⁾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 사업배경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그린뉴딜 지중화」 / 2021~2025년(5개년)
- 사업범위 : 가공배전선로 및 해당 전주에 가공된 통신선로 지중화
- 비용분담 : 정부 20%, 지자체 30%, 한전·통신사 50% 이내

학교 통학로	전통시장	노후 산업단지	도시재생 연계
			
학교 주출입문 반경 300m 내	전통시장 경계 50m 내 인접도로·진입로 (시장내부 제외)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산업단지(서울 구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한정

9) 정릉천2복개 구조물 내진성능 보강 (사업별설명서 p. 1055)

- 동 사업은 정릉천2복개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여 지진

28) 2025년 한전 승인 사업 중 투자심사 미이행으로 추경 미반영된 사업 7개소
 - 강북구 솔샘로(미양초), 금천구 시흥대로(금천고), 광진구 장안초등학교 주변, 도봉구 도봉중학교 통학로, 중랑구 장미꽃빛거리(B)존, 중랑구 용마산로(중화중)통학로,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기능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기정예산 2억원 전액을 감액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0	(x-) 200,000	(x-) Δ200,000
시설비	(x-) 0	(x-) 200,000	(x-) Δ200,000

- 이는 2017년 완료된 내진보강 실시설계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완설계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정밀안전점검에서 내진성능 재검증 결과 별도의 보완설계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설계비 전액을 감액한 것임.
- 당초 보완설계 예산 편성 이후 정밀안전점검 결과가 확인됨에 따라 이번 감액은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으로 판단되나 추후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사업 간 연계성과 타당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10) 도로시설물 경관조명 유지보수 (사업별설명서 p. 1058)

- 동 사업은 교량, 고가차도 등의 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기정예산 13억 5천만원에서 35억원(259%)이 증가한 4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4,850,000	(x-) 1,350,000	(x-) 3,500,000
시설비	(x-) 1,290,000	(x-) 1,290,000	(x-) 0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x-) 3,560,000	(x-) 60,000	(x-) 3,500,000

- 이는 강변북로 두모교 약 1.2km 구간(옥수역 일대~성수JC)의 경관조명을 개선하고자 강변북로 교량 측면 및 하부 구조물, 교각부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서울시는 해당 구간이 복잡한 고가 구조물이 밀집해 있고 하부 공간이 어두워 시민 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관조명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강변북로 두모교(옥수역 일대~성수JC) 경관조명 개선」 - 도로시설과

- 위 치 : 강변북로(두모교), 옥수역 일대 ~ 성수JC 1.2km
- 규 모 : 교량 측면, 하부, 교각부 경관조명 설치
- 사업기간 : 2025.7. ~ 2026.5.
- 총사업비: 3,500백만원



[두모교(한남대교 방면)]



[두모교(중랑천 하류 방면)]



[미디어아트(예시)]



[교량 하부 경관조명 설치(예시)]

- 동 사업은 어두운 교량 하부의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금회 추경이 ‘민생안정’, ‘도시안전’, ‘미래투자’를 목적으로 편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도시 미관 개선 중심의 동 사업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고, 추경의 편성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인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11) 도로터널 노후 방재시설 개량 (사업별설명서 p. 1062)

- 동 사업은 노후화된 방재시설 교체로 터널 내 화재 등 재난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기정예산 63억 69백만원 대비 13억 69백만원(21.5%)을 감액한 50억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4,999,790	(x-) 6,368,790	(x-) Δ1,369,000
시설비	(x-) 3,273,790	(x-) 4,614,790	(x-) Δ1,341,000
감리비	(x-) 93,000	(x-) 121,000	(x-) Δ28,000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x-) 1,633,000	(x-) 1,633,000	(x-) 0

- 이는 ‘남산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에서 남산 1·2·3호 터널의 통합 방재시설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7억 22백만원을 증액²⁹⁾하고 ‘개봉지하차도 방재시설 보완’ 사업의 당해연도 예산 31억원을 전액 감액함에 따른 것임.
- 먼저, ‘남산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은 남산터널 3개소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각 터널의 소방설비·제연설비·비상방송 등 방재시설을 하나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하고

29) 방재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산출근거

- 방재·전기시설 제어시스템 통합: 9억원
- 비상방송, 긴급전화 등 기타 설비 일체 통합: 5.5억원
- 각 터널 화재수신반 통합: 2.5억원
- 감리비: 22백만원

원격으로 제어하는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³⁰⁾으로

- 2024년도 제1회 추경에서 편성된 ‘남산 1·2·3호 터널 CCTV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통합관제실 리모델링 공사가 6월 완료 예정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후속 단계인 ‘방재시설 통합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임.



[그림] 통합관리센터 운영 참고예 (금화터널 통하관리센터)

- 반면, ‘개봉지하차도 방재시설 확충 사업’은 ’22. 12월 제2경 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에서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를 계기로 서울시가 수립한 방음터널 화재 대비 방재대책³¹⁾의 일환으로,

30) 통합관리센터 시스템 구성

= 관제시스템(CCTV 모니터링) + 자동제어시스템 (전기/방재설비 상태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31) ‘서울시 방음터널 화재대비 방재대책’ - 행정2부시장 제28호, 2023.2.8.

- 개봉지하차도 내 옥내소화전, 비상경보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등 방재시설 3종 설치를 위해 3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개봉지하차도의 방재등급이 상향(3등급→2등급)됨에 따라 상향된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회 감액된 것임.
- 2009년 제정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수차례 개정³²⁾되며 방재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서울시는 시내 도로터널에 대한 방재 등급을 재산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22. 4월부터 실시한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 용역'을 최근 완료('24.5월)하였음.
- 용역 결과, 조사 대상인 터널 및 지하차도 35개소 중 개봉지하차도를 포함한 3개소의 방재등급이 상향³³⁾되었고, 도로터널의 피난대피시설 개선, 방재시설 확충 등의 개선방안이 제안됨에 따라 시는 개봉지하차도의 상향된 방재 등급 기준에 맞춰 '방재시설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25.7월 완료 예정) 후 방재시설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임.
- 도로터널의 방재시설은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핵심 시설인 만큼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상향된 방재등급에 따라 방재시설을 조속히 설치·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32)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09. 8월 제정 : 연장3등급 이상 피난연결통로 설치(대인용 250m, 차량용 750m)
- '16. 8월 개정 :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신설(피난대피시설 미흡한 도로터널)
- '21.12월 개정 : 250m이상 4등급 정량적위험도 평가 후 피난대피시설 보완
- '23. 8월 개정 : 250m이상 방음터널 연장 3등급으로 강화

33) 방재등급 상향 33개소(방재 3등급→2등급): 위례지하차도, 개봉지하차도, 금하지하차도

다만,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인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임.

□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

- 기간/금액: '22.08.16. ~ '24.05.31. (22개월) / 378백만원
- 용역사: 유원컨설턴트(주), (주)동일기술공사
- 과업대상: 총 35개소 (피난대피시설 미흡 25개소, 방재시설 강화 10개소)
- 과업내용:

- 지하차도터널 등 소규모터널 23개소의 제연(보조)설비 설치방안 검토
- 중·대규모터널 12개소 방재시설 강화방안 검토
- 피난대피시설 미흡 터널 25개소의 정량적위험도평가(QRA) 평가 등

○ 주요성과:

① 방재등급 평가에 따른 등급 상향 터널 개선

- 평가결과 : 총 3개소(위례지하차도, 개봉지하차도, 금하지하차도) 방재 3등급 → 2등급
- 개선방안 : 방재2등급 설비 설치
- 소요예산 : 총 273억 원

② 도로터널 위험도 평가에 따른 피난대피시설 개선

- 평가결과 : 터널 10개소(남산 1·2·3, 홍지문, 정릉, 구릉, 금하, 동망봉, 서리풀, 잠두봉) 사회적위험도 초과
- 개선방안 : 격벽분리형 대피통로, 제연설비, 중앙분리벽 설치
- 소요예산 : 총 1,230억 원

③ 피난대피안전 강화를 위한 방재시설 추가 확충

- 보강설비 : 자동사고감지, 진입차단설비, 비상방송설비, 연기확산방지설비
- 소요예산 : 총 414억 원

④ 도로터널 방재설비 개선

- 보강설비 : 소방설비, 경보설비, 피난대피설비, 소화활동설비
- 소요예산 : 총 118억 원

⑤ 반/횡류식터널 균일배기에서 집중배연으로 변경 검토

- 대 상 : 남산1호터널
- 검토결과 : 집중배연방식(단, 배연팬 용량 증설, 풍도 구조 안전성, 전력용량 등 종합적 검토 필요)
- 소요예산 : 총 155억 원

12)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 동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 제12조³⁴⁾에 따라 서울시 관리교량 138개소³⁵⁾에 대해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으로 자체재원 4억 7백만원을 감액하고 소방안전교부세 4억 7백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방교부세법」 제9의4³⁶⁾에 따라

- 3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민간관리주체가 어음·수표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부도(不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 민간관리주체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⑤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 ③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서울시 관리교량 138개소: 정밀안전진단 25개소, 정밀안전점검 110개소, 하자점검 3개소

36)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범위 내에서 조성되며, 그 중 5%를 안전사업 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374억 38백만원) 중 4억 7백만원을 동 사업에 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